

워싱턴 DC 미 연방지방법원

성명불상 남녀 D-1, E-1 ~ E-14, F-1, G-1 ~ G-4, H-1 ~ H-3, I-1 ~ I-9, J-1 ~ J-6, K-1 ~ K-8, L-1 ~ L-2, M-1 ~ M-2, N-1 ~ N-3, O-1, P-1 ~ P-4, Q-1 ~ Q-3, R-1, S-1 ~ S-3, T-1 ~ T-5, U-1 ~ U-3, V-1 ~ V-5, W-1 ~ W-4, X-1, Y-1 ~ Y-2, Z-1 ~ Z-4, AA-1 ~ AA-7, BB-1 ~ BB-2, CC-1 ~ CC-6, DD-1, EE-1 ~ EE-2, 그리고 FF-1 ~ FF-9, GG-1 ~ GG-2, HH-1

사건 번호 1:23-cv-00273

원고들,

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피고.

외국주권면책법에 의거한 국가 후원 테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제 2 차 수정 소장

서론

1. 원고들은 1968 년 1 월 23 일 북한이 미국 푸에블로호(“푸에블로호”)와 83 명의 승무원을 공격하고 그 후 11 개월 동안 승무원을 납치하고 고문한 것에 대해 미국 외국주권면제법(FSIA)의 “테러 예외”, 미국법(U.S.C.) 제 28 편 제 §1605A 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DPRK” 또는 “북한”)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은 본 법원이 피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승무원과 그 유족이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두 건의 이전 사건과 동일한 핵심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명불상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연방 판결집 보충 제 3 편 제 414 권 109 페이지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 2019) (프리드리히 판사) (부분 불이행 판결 신청을 승인하고 승무원 61 명과 가족 110 명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 *성명불상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8-CV-0252, 2021 WL 723257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 2021년 2월 24일, 프리드리히, 제이. 판사) (프리드리히, 제이. 판사) 참조.) (“*푸에블로 I*”) (모든 원고에게 손해배상 판결); *매시 등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미연방 판결집 보충 제 2 편 제 592 권 57, 75-76, 77 페이지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 2008) (케네디 2 세. 제이. 판사) (북한에 이전 외국주권면제법 테러 예외 조항인 미국법(U.S.C.) 제 28 편 제 §1605(a)(7) 조항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푸에블로 승무원 4 명과 가족 1 명에게 손해배상 판결).

2. 북한은 공무원, 피고용인, 용역원 및/또는 요원들을 통해 수행한 이 공격으로 선원 1 명이 사망하고 10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선박도 납치했습니다. 그 후 북한은 살아남은 82 명의 선원들(이하 “선원들”)을 납치하여 끔찍하고 비인도적인 조건에서 334 일 동안 인질로 잡고 1968 년 12 월 23 일 석방될 때까지 반복적인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승무원들의 가족들에게도 해를 끼쳤습니다.

3. 미국 국무부는 이 사건을 일으킨 북한의 행동을 그 부분적인 이유로 하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곤 했는데 가장 최근에 지정한 날짜는 2017 년 11 월 30 일입니다. 외국주권면제법의 테러 예외조항은 국가가 후원하는 테러의 특정 피해자에게 공무원, 피고용인, 군인 및/또는 요원이 특히 초법적 살인, 인질 납치, 고문 행위 등에 관여하거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지정된 테러 후원 국가에 대한 사적 소송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 원고에는 미국 정부를 위해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이 국제 수역에서 푸에블로호를 공격했을 당시 푸에블로호에 승선하고 있던 생존 승무원과 사망한 승무원의 상속 유산(estate)이 포함됩니다(이하 총칭하여 “승무원 원고”). 이들 중 누구도 *매시* 또는 *푸에블로 I* 사건의 원고는 아니었습니다. 승무원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인질로 잡고 고문함으로써 심각하고 지속적인 신체적 상해, 신체 훼손, 정신적 피해 및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데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5. 원고에는 1968년 당시 승무원의 직계 가족이었으며 피고의 승무원 인질 납치 및 고문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망자의 개인 및 재산도 포함됩니다(이하 “가족 구성원 원고들”). 이들 중 누구도 *매시* 또는 *푸에블로 I* 사건의 원고는 아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원고들은 북한으로 인한 위로금의 결여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6. 원고들은 인질 납치 및 고문에 대한 연방법과 폭행 및 구타, 허위 감금,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가해, 위로금 결여에 대한 주 관습법 이론에 따른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7. 이 문서와 동시에 제출된 수정 부속서 A (본 소장과 함께 제출된 수정 부속서 A 및 B (이하 “수정 부속서 A”)의 봉인 제출 통지에 첨부된 부속서)의 그룹 1에 명시된 15명의 생존 및 사망 유산 승무원 원고들 각자는 공격 당시 외국주권면제법 제 §§1605A(a)(2)(A)(ii) 및 1605A(c)(2)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군대의 일원이었습니다.

8. 수정된 부속서 A의 그룹 2에 명시된 48명의 생존 가족 구성원 원고들은 각각 제 §§1605A(a)(2)(A)(ii)(I) 및 §§1605A(c)(1)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미국 국민입니다.

9. 수정된 부속서 A의 그룹 3에 명시된 51명의 사망 유산 가족 구성원 원고들 각자는 사망 당시 외국주권면제법 제 §§1605A(a)(2)(A)(ii)(I) 및 외국주권면제법 제 §§1605A(c)(1)에 사용된 용어에 따라 미국 국민이었습니다.

10. 수정된 부속서 A의 그룹 4에 명시된 5명의 가족 구성원 원고들은 각각 외국 국적자이거나 사망 당시 군인인 푸에블로 승무원의 직계 친척이었습니다.

11. 피고 북한은 외국주권면제법 제 §1603(a) 조항에 정의된 대로, 그리고 제 §§1330(a) 및 1605A 조항에 사용된 대로 외국 국가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북한은 외국주권면제법 제 §1605A(a)(2)(A)(i) 조항의 의미 내에서 테러리즘 후원 국가이며, 이 소송을 야기한 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미국 국무부에 의해 그렇게 지정되었습니다¹.

¹ 북한은 1988년 2월 5일에 처음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79년 미국수출관리법(EAA) 제 6(i) 조항에 의거한 통지, 결정; 북한, 미국 연방 판결집 제 53권 3477-01 페이지 (1988년 2월 5일). 이러한 지정은 원고들이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북한의 행동에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참조: 매시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 연방 판결집 제 2편 제 53권 57, 74 페이지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 2008)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이 소송에서 제기된 북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근거한 것이라고 결론지음). 북한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던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의 폐기를 약속한 미국과의 합의(이후 실패)에 따라 2008년 10월 11일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참조: 마크 이. 만인, 엠마 챌렛-에이버리, 다이앤 레낙, 이안 리네하트, 존 롤린스, 미국 의회 기록집 R43865, 북한: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복귀? 4 페이지 (2015). 북한은 2017년 11월 20일 재지정될 때까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참조: 미국 국무부, “테러지원국”, 출처 <https://www.state.gov/j/ct/list/c14151.htm> (가장 최근 열람 날짜: 2023년 1월 24일).*

소송 관할권 및 관할지

12.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외국주권면제법의 테러 예외 조항인 미국법(U.S.C.) 제 28 편 제 §1605A(a)(1) 및 (2) 조항에 따라 이 소송에 대한 주제별 사안 관할권을 갖습니다.

외국 국가는 고문, 초법적 살인, 항공기 사보타주, 인질 납치[및] 인질 납치 행위로 인한 개인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외국 국가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또는 미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 외국 국가가 ... 행위가 ... 발생할 당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거나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그렇게 지정되었고, ... 이 조항에 따라 청구가 제기될 당시에도 그렇게 지정되었거나 이 조항에 따라 청구가 제기되기 전 6 개월 이내에 그렇게 지정된 경우 ... 이 조항에 따른 청구를 심리해야 한다.

13. “테러 예외”는 푸에블로호 승무원과 그 직계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주제별 사안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북한은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푸에블로호 승무원을 인질로 잡고 고문을 가한 결과 2017 년에 재지정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²

14. 미국법(U.S.C.) 제 28 편 제 §1330(b) 조항에 따라, 본 법원은 외국주권면제법 제 §1608(a) 조항에 따라 소장 송달이 완료되면 북한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³

15. 외국에 대한 민사 소송은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미국법(U.S.C.) 제 28 편 제 §1391(f)(4) 조항에 따라 본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습니다.

² 참조: *성명불상 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연방 판결집 보충 제 3 편 제 414 권 124 페이지 및 각주 6.

³ 원고는 북한에 송달할 문서에 외국주권면제법 제 §1605A(a)(A)(iii) 조항에 따라 증재를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사실 관계

북한이 푸에블로 호와 그 승무원들을 공격하다

16.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는 83명의 승무원과 함께 한반도 연안 국제 수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에는 미국 해군 장병과 민간인 몇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시함인 푸에블로호에는 장갑(armored protection)이 없었고 공격에 대한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제한된 무기만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17. 그날 오후 몇 시간 동안 북한군은 푸에블로호에 접근했고, 이윽고 중무장한 어뢰정, 공격함, 전투기 등으로 푸에블로호를 포위했습니다. 북한군은 푸에블로호에게 북한군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8. 푸에블로호는 대치를 피하기 위해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북한이 출구를 막았습니다. 북한 어뢰정은 어뢰 공격으로 푸에블로호를 위협했고, 이윽고 선박에 수차례 기관총 사격을 가했고 57밀리미터 포탄을 전방 마스트에 퍼부어 안테나를 박살내고 파편이 갑판 전체에 난사 되도록 했습니다.

19.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사한 사격 라운드 중 하나로 인하여 푸에블로호 소방관 듀안 호지스(Duane Hodges)가 사망했습니다. 수많은 승무원들이 호지스 선원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 이윽고 무장한 북한군이 푸에블로호에 승선하여 승무원들에게 눈을 가리고 결박된 채 얼어붙은 갑판에 앉으라고 명령한 후 강제로 앉혔습니다. 즉시 이에 응하지 않는 승무원들은 북한군에게 구타 당했습니다.

북한,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을 인질로 잡다

21. 첫 공격 후 승무원들은 본토로 강제로 이송되었습니다. 무장한 북한 군인들은 눈을 가린 채 결박된 승무원들을 푸에블로 호에서 내리도록 하여 침을 뱉고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북한 민간인 군중들 사이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 승무원들은 버스로 끌려가 강제로 버스에 탑승한 후 기차역으로 이동하여 평양으로 이송될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북한군은 이송하는 동안 일부 승무원들을 구타하면서 미국 스파이라는 자백을 요구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추가 구타를 당할 수 있다는 처벌 하에 서로 대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2. 그 후 11 개월 동안 북한은 살아남은 승무원들을 북한의 두 구금 시설에서 비위생적이고 타락한 환경에 인질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인질들은 평양에 있는 첫 번째 구금 시설에 약 6 주 동안 구금되었는데, 승무원들은 이 시설을 “헛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승무원들은 1968년 12월 23일에 석방될 때까지 “농장”이라고 불리웠던, 평양 외곽에 있는 두 번째 구금 시설에 구금되었습니다.

북한,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헛간”에서 고문하다

23. 승무원들이 “헛간”에 도착했을 때, 무장한 북한 군인들과 다른 경비병들은 승무원들을 단단한 전투화를 신은 발로 차고, 소총과 총검 개머리판으로 구타하고, 심각하고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운동을 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강제 운동으로 인해 일부 승무원들은 신체 손상 변형과 장기적인 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24. 미국이 북한을 염탐하고 있다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인질로 잡힌 첫 6 주 동안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씩 반복적으로 진행된 고문에서 승무원들은 고문관들이 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만족할 때까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의자를 머리 위로 끝없이 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승무원이 의자를 든 채 버티기 시작하면 고문관들은 가까이 다가와 승무원의 온몸을 발로 차고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길질과 구타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면 승무원들은 억지로 의자를 한 번 더 들어올렸다가 잠시 후 다시 의자를 떨어뜨리고 추가 구타를 당했습니다.

25. 또한 북한 경비병들은 일부 승무원들의 속옷을 벗기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승무원들의 무릎 뒤쪽 다리 사이에 가로 세로 2 인치 크기의 나무 막대를 넣은 채로 꿇어 앉아 있도록 하여 다리의 혈액순환을 차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경비병들은 무릎을 꿇은 채로 울퉁불퉁한 마루판 위에서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걷게 했고, 그러는 동안 무릎은 마찰로 인해 피가 흘렀습니다. 승무원들이 멈추면 간수들은 서명된 자백을 받기 위해 계속 구타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장한 간수들이 그날은 그만 포기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고문을 당했습니다.

26. 고문관들은 승무원들이 북한의 명령과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 또는 미군을 때리는 것이 그들에게 일종의 스포츠였다는 이유 외에는 전혀 다른 이유 없이 슬하게 여러 차례 구타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27. 북한은 또한 승무원들에게 자신들의 명령과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살해 위협 및/또는 다른 승무원들에 대한 추가 고문 등 더욱 심각한 고통과 고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농장”에서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에 대한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28. “농장”에서도 고문과 구타가 계속되었고, 종종 승무원들이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구금자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북한은

또다시 승무원들에게 미국 스파이라는 자백 강요를 시도했습니다. 장전된 총을 승무원의 머리에 대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총을 승무원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긴 후 총이 발사되지 않은 후에야 인질이 총이 장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등의 강압적인 수법이 사용되었습니다.

29. 선원들이 억류된 동안 북한은 푸에블로 호가 스파이 활동을 위해 북한 영해를 침범한 혐의에 대해 미국이 사과를 표명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인질들을 데리고 연출된 기자회견을 최소한 두 차례 열었습니다. 북한은 또한 승무원들에게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강요했으며, 북한 정부가 그들을 잘 대우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하고 가족들로 하여금 미국 당국에 사과하도록 요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승무원들은 북한을 지지하는 선전 영화에 출연하도록 강요당했는데, 그러한 선전 영화는 적어도 두 편 이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촬영을 마친 인질들은 자신들을 이용할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30. 1968년 12월, 북한은 승무원들에게 미국이 사과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석방되기 일주일 전, 북한은 승무원 전원에게 반항 행위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승무원들은 그 주를 “지옥의 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사진 촬영에서 일부 승무원들은 사진 속에서 ‘가운데 손가락’ 욕설 제스처를 취하며 자신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미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잡혔다는 북한의 주장이 거짓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제스처의 의미를 알게 된 북한은 극도의 굴욕감을 느낀 나머지 생존한 82명의 승무원 전원을 일주일 내내 탁자에 앉혀 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턱을 가슴에 대고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게 하는 부동자세 고문을 가했습니다. 움직이면 해당 승무원은 머리카락이나 얼굴에 심한 타격을

입거나 갈비뼈를 느닷없이 세계 걷어차였습니다. 실제로 ‘가운데 손가락’ 제스처로 사진을 찍힌 승무원들은 잔인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지옥주간”의 여파로 북한은 많은 승무원들에게 수년 동안 지속되거나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처와 흉터가 남았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사과문에 서명한 후에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석방했다

31. 미국이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북한을 염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문에 마지못해 서명한 후, 인질 82명 전원은 미국으로 송환될 것을 기대하며 1968년 12월 23일 북한 판문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환을 앞두고 승무원들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불리는 다리를 한 줄로 건너야 하며, 다리를 건너는 동안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건너기를 기다리는 뒤쪽 인질들이 총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협박을 들었습니다.

32. 요컨대, 승무원들이 거의 1년 동안 억류되어 있는 동안 북한의 공무원, 피고용인, 군인 및/또는 요원들은 승무원들에게 야만적인 구타, 살해 위협, 모의 처형, 수면 박탈, 음식 박탈, 반복적이고 장기간의 스트레스 자세 유지, 세뇌 시도 등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정기적으로 가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엇보다도 국제 선전을 위한 자백을 얻고 미국이 북한 스파이 활동에 대해 거짓 공개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북한은 승무원과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33. 11개월 동안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승무원들이 석방된 후에도 승무원들과 그 가족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34. 한 명의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승무원이 목숨을 건졌지만, 대부분은 석방된 후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중 많은 승무원들이 심각하고 영구적인 신체적 부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기타 지속적인 정신 건강 문제, 악몽과 회상, 심신에 대한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35. 승무원들의 직계 가족들도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북한이 승무원들을 인질로 잡고 고문을 가하는 동안 승무원들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곤경에 대한 정보를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딱한 경우가 누차 발생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계속되는 불확실성과 가차없이 엄습하는 공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고문당하거나, 신체가 손상 변형되거나, 다른 어떤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36. 가족들은 승무원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동반자 관계, 애정, 사랑의 말 등을 상실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계속적으로 승무원의 고문 및/또는 죽음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11개월 동안 승무원을 잃고 고통을 겪은 많은 사람들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을 돌보거나 여의는 부담을 동시에 짊어졌습니다. 아들, 남편, 아버지, 형제가 북한에 의해 석방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중 많은 가족 구성원들은 공격 이전에 누렸던 관계에 영구적이고 부정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37. 북한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고발된 행위를 수행한 개인들에게 자금, 훈련/노하우, 가혹한 고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 도구 등 물질적 자원과 지원을 항상 제공했습니다.

38. 따라서 승무원 원고들은 이 법원에 (1) 피고의 폭행, 구타, 억울한 감금,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가하기 등의 고문 및 학대 행위로 인해 입은 개인적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2) 그러한 행위로 인한 고통과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39. 가족 구성원 원고들은 이 법원으로부터 (1) 승무원의 인질 납치 및 고문으로 인한 위로금 손실 및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묻고, (2) 위로금 및/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제 청구

소인 I - 인질 납치 및 고문에 대하여 승무원 원고들을

대신한 소송

40. 원고는 전술한 모든 단락에 명시된 사실과 주장을 여기에 언급만 함으로써 본문서에 다시 완전히 명시된 것처럼 되풀이해서 주장 및 통합합니다.

41. 피고는 “인질 납치”에 대해 외국주권면제법 제 §1605A(c) 조항에 따라 각 승무원 원고들에게 책임을 집니다. 외국주권면제법 제 §1605A(h)(2) 조항은 “인질 납치”를 “인질 납치에 반대하는 국제 협약(“인질 납치 협약”) 제 1 조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의미”로 정의합니다. 유엔 총회, 인질 납치에 관한 국제 협약, 1979년 11월 17일, 제 21931호,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3ad4.html>(가장 최근 열람 날짜: 2023년 1월 24일). 인질 납치 협약 제 1 조는 “인질 납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제 3자, 즉 국가, 국제 정부 간 기구,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집단에게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하 “인질”)을 납치 또는 구금하고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구금하도록 위협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42. 피고는 공무원, 피고용인, 군인 및/또는 요원을 통해 승무원 원고들(인질들)을 구금하고 미국 정부가 피고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인정하고 그러한 스파이 행위에 대해 피고가 작성한 공개 사과문에 서명하지 않는 한 그들을 상해를 입하거나, 살해하거나 계속 구금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인질을 납치하고 인질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살해한 광범위한 기록을 근거로 테러의 국가 후원자로 지정되었으며, 승무원들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하겠다는 반복적이고 수많은 위협에 무게와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43. 피고는 “고문”에 대해 외국주권면제법 제 §1605A(c) 조항에 따라 승무원 원고들에게 책임을 집니다. 외국주권면제법 제 §1605A(h)(7) 조항은 “고문”을 “1991 년 고문 피해자 보호법(미국법(U.S.C.) 제 28 편 제 §1350 조, 이하 “고문피해자보호법”) 제 3 조에서 정의하는 의미”로 정의합니다. 고문피해자보호법 제 3 조에서는 ‘고문’을 “범죄자의 구금 또는 신체적 통제 하에 있는 개인에 대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고통(법적 제재에 의해서만 발생하거나 그에 내재하거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이나 고통 제외)을 가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거나, 개인 또는 제 3 자가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거나, 개인 또는 제 3 자를 협박 또는 강요하거나, 모든 종류의 차별에 근거한 이유로 해당 개인에게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경우.”

44. 피고는 공무원, 피고용인, 군인 및/또는 요원을 통해 피고의 구금 시설에서 승무원 원고들에게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해와 고통과 고통을 가함으로써 승무원 원고들에 대한 고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승무원들을 협박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간첩 혐의로 처벌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45. 이 문서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와 피고의 공무원, 피고용인, 군인 및/또는 요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의 물질적 지원의 직접적인 근인의 결과로 승무원 원고들은 포로 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46. 따라서 승무원 원고들은 *푸에블로 1* 사건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한 승무원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금액인 1,335 만 달러의 기본 금액에 각 승무원 원고들이 억류에서 풀려난 후 살아온 기간을 고려하고 대부분의 승무원 원고들과 비교하여 상해의 성격과 심각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한 금액으로 심각하고 지속적인 신체적 상해, 장애, 심리적 피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적 배상을 구합니다.

소인 II - 폭행 및 구타에 대하여 승무원 원고들을

대신한 소송

47. 원고는 전술한 모든 단락에 명시된 사실과 주장을 여기에 언급만 함으로써 본 문서에 다시 완전히 명시된 것처럼 되풀이해서 주장 및 통합합니다.

48. 피고는 §§21(폭행), 13(폭행, 유해한 접촉) 및 18(폭행, 공격적 접촉) 조항 불법행위의 재구성(제 2 판)에 설명된 바와 같이 외국주권면제법 제 §1605A(c) 조항 및 주 관습법에 따라 승무원 원고들에게 폭행 및 구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49. 피고는 공무원, 피고용인, 군인 및/또는 요원을 통해 푸에블로호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선박에 사격을 가하고, 선박에 승선하여 푸에블로호와 선원들을 나포할 때 승무원 원고들에게 해롭거나 불쾌한 접촉을 일으키거나 해롭거나 불쾌한 접촉이 임박했다는 우려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으며, 실제로 그러한 접촉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피고는 승무원 원고들이 피고의 구금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그리고 승무원 원고들이 억류된 334 일 동안 공격 및/또는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때 그에 필요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50. 이 문서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와 피고의 공무원, 피고용인, 군인 및/또는 요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의 물질적 지원의 직접적인 근인의 결과로 승무원 원고들은 억류 기간 동안과 그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심각하고 지속적인 신체적 상해, 신체 손상 변형, 정신적 피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정신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51. 따라서 승무원 원고들은 푸에블로 1 사건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한 승무원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금액인 1,335 만 달러의 기본 손해 배상액을 요구하며, 각 승무원 원고들이 억류에서 풀려난 후 살아온 기간을 고려하고 대부분의 승무원 원고들과 비교하여 다양한 부상의 성격과 심각성을 고려하기 위해 적절히 조정된 금액으로 배상액을 청구합니다.

소인 III -고의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하여 승무원 원고들을 대신하여 소송

52. 원고는 전술한 모든 단락에 명시된 사실과 주장을 여기에 언급만 함으로써 본 문서에 다시 완전히 명시된 것처럼 되풀이해서 주장 및 통합합니다.

53. 피고는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의 재구성(제 2 판) §46(1) 조항에 설명된 대로 외국주권면제법 제 §1605A(c) 조항 및 주 관습법에 따라 승무원 원고들에게 책임을 집니다.

54. 피고의 공무원, 피고용인, 군인 및/또는 요원을 통해 본 문서에서 주장된 피고의 행위는 극단적이고 터무니없었으며 의도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각 승무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55. 이 문서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와 피고의 공무원, 피고용인, 군인 및/또는 요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의 물질적 지원의 직접적인 근인의 결과로 승무원 원고들은 포로 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56. 따라서 승무원 원고들은 고통, 고통, 정신적 괴로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이 당한 상해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푸에블로 1* 사건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한 승무원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금액인 1,335 만 달러의 기본 금액에 각 승무원 원고들이 포로에서 석방된 후 살아온 기간을 고려하고 대부분의 승무원 원고들과 비교하여 부상의 성격과 심각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된 배상액을 청구합니다.

소인 IV -허위 감금에 대하여 승무원 원고들을

대신하여 소송

57. 승무원 원고들은 전술한 모든 단락에 명시된 사실과 주장을 여기에 언급만 함으로써 본 문서에 다시 완전히 명시된 것처럼 되풀이해서 주장 및 통합합니다.

58. 피고는 불법행위의 재구성(제 2 판) 제 §35 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주 관습법에 따라 승무원 원고들에게 허위 감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59. 피고는 공무원, 피고용인, 군인 및/또는 요원을 통해 푸에블로호를 나포할 때 각 선원 원고들을 압수한 선박에 감금할 의도로 행동했고, 각 선원 원고들을 버스와 기차에 강제로 태워 피고의 구금 시설로 이송했으며, 각 선원 원고들을 구금 시설에 구금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로 인해 각 승무원 원고들은 334일 동안 부당하게 감금되었습니다.

60. 이 문서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와 피고의 공무원, 피고용인, 군인 및/또는 요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의 물질적 지원의 직접적인 근인의 결과로 승무원 원고들은 포로 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61. 따라서 승무원 원고들은 고통, 고통, 정신적 괴로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이 당한 상해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1,335 만 달러(푸에블로 I 사건에서와 유사한 피해를 당한 승무원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기준 금액)를 요구하며, 각 승무원 원고들이 포로에서 석방된 후 살아온 기간을 고려하고 대부분의 승무원 원고들과 비교하여 부상의 성격과 심각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된 배상액을 청구합니다.

소인 V - 가족 구성원 원고들을 대신하여 위로금 및 고의적 정서적 고통 가해에 대한 소송

62. 가족 구성원 원고들은 전술한 모든 단락에 명시된 사실과 주장을 본 문서에 완전히 명시된 것처럼 반복, 주장 및 참조하여 통합합니다.

63. 피고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 구성원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의 재구성(2 차) §46(2)(a) 조항에 설명된 대로 외국주권면제법 제 §1605A(c) 조항 및 주 관습법에 따라 “위로금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외국주권면제법에 따라 “위로금 청구는 고의적 정서적 고통 가해(“고의적 정서적 고통”)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되므로 고의적 정서적 고통 청구와 구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⁴

64. 피고는 컬럼비아 특별구 법에 따라 외국 시민권자인 가족 구성원 원고들에게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과 위로금 결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컬럼비아 특별구는 해당 고의적 정서적 고통 가해 청구에 대해 불법행위의 재구성(제 2 판) 제 §46(2)(a) 조항에 따릅니다.

65. 피고는 공무원, 피고용인, 군인 및/또는 요원을 통해 피고가 푸에블로와 그 승무원을 나포하고 그 후 각 가족 구성원 원고의 각 승무원을 구금할 당시 의도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각 가족 구성원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피고의 승무원들에 대한 극단적이고 터무니없는 학대와 학대는 각 가족 구성원 원고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였거나 의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의 승무원들에 대한 인질 납치 및

⁴ “미국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따르면 ‘위로금 청구는 고의적 정서적 고통 가해 청구와 구별할 수 없다.’” *울리 대 이란 이슬람 공화국*, 미연방 판결집 보충 제 3 편 제 75 권 311, 336 페이지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 2014) (램버스, 제이. 판사) (*בל러리 대 이란 이슬람 공화국*, 미연방 판결집 보충 제 3 편 제 700 권 52, 79 페이지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 법원 2010) (램버스, 제이. 판사) 인용).

고문은 그 자체로 극단적이고 터무니없는 행위이며, 테러리스트가 피해자의 직계 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기 위해 의도한 것입니다.

66. 이 문서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와 피고의 공무원, 피고용인, 군인 및/또는 요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의 물질적 지원의 직접적인 근인의 결과로, 각 가족 구성원 원고들은 승무원이 억류되어 있는 동안과 그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67. 따라서 가족 구성원 원고들은 그들이 입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배우자의 경우 400만 달러, 부모 또는 자녀의 경우 250만 달러, 형제자매의 경우 125만 달러(승무원과 동일한 가족 관계에 있는 *푸에블로 I* 사건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한 가족 구성원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를 기본으로 하고,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 원고들과 비교하여 고통과 고통의 성격과 심각성의 실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된 배상액을 청구합니다.

구제 청구

따라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구제를 정중히 청구합니다.

68. 국가가 후원하는 테러리즘의 해당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고령자인 청구에 대한 신속하고 최종적인 해결;

69. 본 문서에 제기된 행위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그리고

70. 원고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신체적 상해, 신체적 손상 변형, 정신적 피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고통과 괴로움 및 위로금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상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법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그리고 *푸에블로 I* 사건에서 허용한 구제책에 따라 채택될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될 금액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판결.

날짜: 2023년 9월 11일

정중히 제출합니다.

서명: /서명/ 마크 N. 브레이빈

마크 N. 브레이빈(워싱턴 DC 변호사 번호 249433)

J. 매튜 윌리엄스 (워싱턴 DC 변호사 번호 501860)

티아나 A. 베이(워싱턴 DC 변호사 등록 번호 1013476)

알비나 가산베코바(워싱턴 DC 변호사 등록 번호
1618930)

미첼 실버버그 앤 크누프 LLP

1818 N Street NW, 7 층

워싱턴 DC, 20036

(202) 355-7900 (전화)

(202) 355-7886 (팩스)

mnb@msk.com

mxw@msk.com

tab@msk.com

alg@msk.com

이상 원고측 변호사

CERTIFICATION OF TRANSLATION
and
DECLARATION

State of California)
) S. S.
Los Angeles County)

I, Soomi Ko, the undersigned, declare that I am a duly certified Korean Court Interpreter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certified by the State of California and the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s, with competent knowledge of Korean and English, and that I have truthfully and correctly translated the **4 files listed below re: John & Jane Does D-1, et al. v.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ase No. 1:23-cv-00273** from English to Korean and that the said translation is,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 true and correct translation. I further declare that I am neither counsel for, related to, nor employed by any of the parties, and that I have no financial or other interest in the outcome of any action related to this translation. I declare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correct.

Description of the Translated Documents

1. Second Amended Complaint for Damages for State-Sponsored Terrorism under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2. Notice of Suit
3. Offer to Arbitrate
4. Summons

Executed on September 15, 2023



Soomi Ko
California State Certified Court Interpreter
#300732
(213) 999-7848(Cell)
soomi@komartin.com
www.komartin.com

Ko & Martin Certified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Specializing in Korean and Chinese Languages